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24
----------	-------

발의연월일 : 2026. 4. 14.

발 의 자 : 김선민 · 강경숙 · 서왕진  
신장식 · 전종덕 · 이해민  
황운하 · 차규근 · 김준형  
정춘생 · 김남희 · 이주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사회에서 목욕은 단순히 신체의 청결을 유지하는 위생 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았음. 그러나 최근 에너지 가격의 급등, 인건비 상승 및 고물가 여파로 인해 민간 목욕장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목욕탕 폐업이 속출하고 있음.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이나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어촌 및 구도심 지역의 경우, 민간 목욕탕의 부재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지역 주민의 위생 기본권 침해 문제로 직결되고 있음. 자택 내 목욕 시설이 미비하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그리고 대중목욕탕을 유일한 사랑방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해 온 어르신들에게 목욕탕의 실종은 사회적 고립과 보건 위생의 사각지대를 의미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이른바 작은 목욕탕이나 공공 목욕 시설을 건립·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행법은 주로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규제와 지도·감독에 치중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욕 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공공목욕탕의 설치와 운영에는 막대한 초기 건립비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므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단독으로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목욕탕 설치·운영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공중위생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목욕 시설이 전무한 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 살리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공공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 주민의 위생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목욕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목욕탕의 설치 기준, 이용 대상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공공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16조의2(공공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 주민의 위생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목욕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공공목욕탕의 설치 기준, 이용 대상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p> <p><u>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공공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u>④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u></p>